

파리協約改正은 1979年頃

—開途國主張과 先進國對立—

萬國工業所有權保護에 관한 協約이 1883年 3月20日 파리에서 署名 發効한 지 이제 95년째가 된다. 그러나 이 工業所有權制度는 크게 혼들리고 있다. 그 동안의 同制度는 先進技術大國들에 의해 必要에 따라 發展되어 왔으나 요즘의 國際趨勢는 좀 性質이 다르다 하겠다.

그동안 파리協約의 改正을 위하여 政府間會議가 3次나 열렸으며 1979年쯤에는 루마니아의 브카레스트에서 正式으로 協約改正會議가 열리게 된다.

3회째의 정부간회의는 지난 11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동안에 걸쳐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열렸다. 이른바 B그룹으로 指稱되는 22個先進技術經濟國, 開發途國(LDC)으로 불리는 77개국그룹에서 30개국, 그리고 D그룹으로 알려진 共產圈 9개국등 모두 61개국대표들이 참가하였다.

이에 앞서 지난해 9월에 열린 WIPO(世界知的所有權機構)의 調整委員會에서는 人種差別政策을 반대하는 뜻에서 南阿共和國의 追放을 決議하고 同權構의 모든 會議에서 쫓아내려 하였다. 이에 대해 B그룹의 프랑스代表가 對남아조치는 WIPO規程에 비추어 問題가 있다는 發言에 이어 聲明을 發表하였다.

한편 LDC 그룹은 B그룹의 意見에 맞서 WIPO조정 위원회의 審議나 그 結果로 보아 남아의 추방이 法的, 政治的으로 合當하므로 회의에 남아를 초청하지 않음은 當然하다는 反論이 나왔다.

이어 D그룹에서도 LDC의 主張에 同調하였다. 이러한 曲折을 겪으면서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 첫째, 情報提供問題는 先進國에서의 特許出願人 또는 特許權者가 開發途上國에 출원할 때에는 자기의 출원이 本國 또는 다른 同盟國에서 어떠한 處分을 받고 있는가에 대해 通知할 義務를 진다는 條項 插入이 採擇되었다. 이로서 開發途上國이 審查치 못하고 調査資料가 不備함에 따른 發明의 後進的 登錄이豫防된다

는 것이다.

出願人, 權利者가 提出한 자료가 正確, 信賴性, 完備度등에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이들이 이미 출원 등록하고 있는 다른 同盟國官署에 대하여 客觀的인 정보제공의 요구를 認定하게 되었다. 또한 정보제공의 요청을 받은 官署는 그義務를 져야하며 정보는 自國의 言語로서 無妨하고 政府의 認證은 不必要할 뿐 아니라 複寫로서 대신할 수도 있다. 즉 先進國特許官署에 대한 負擔을 줄이는데 타협한 것이다.

둘째, 開發協力에 대한 條項은 파리協約에서 重要한 規定으로서 선진국이 WIPO를 通過해서 工業所有權制度를 活用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技術革新을 促進시키려는데 主眼을 두고 있다. 다시 말해서 개발도상국이 공업소유권제도를近代化할 경우에는 WIPO가 示範案을 作成하여 指導하고 이 제도의 取扱關係當局政府間機關의 創設에 대한 技術援助, 特許文獻整備를 위한 정보제공등도 하게 되어 있다. 또한 선진국의 特許廳은 개발도상국 심사관의研修教育도 받아들이게 된다.

이밖에 先後進國間의 意見對立의 焦點은 非相互主義의 特惠措處, 原產地表示와 商標의 抵觸等을 들수 있다.

비상호주의적 특혜에 관하여는 워칭·그룹에서 개발도상국민의 선진국에 대한 出願料金을 2분의 1로輕減한다. 優先期間을 선진국 국민보다 2분의 1기간 만큼 加算하여 18個月로 하되 이를 위해 委員會를 設置하는 案과 개발도상국 끼리의 출원인 경우의 案으로 나누어 協議하였다.

협의결과는 선진국그룹이 兩案에 모두 難色을 表明하여 結論을 내지 못하고 각 實務會議에서 棄托키로 했다.

특히 우선권 기간을 선진국보다 2분의 1 이상을 가산하는 문제는 선진국들의 國內法을 改正해야 한다는 점에서 거의 타협의 可能性이 안보인다.

셋째. 特許取消制限規定에 관하여는 第2回準備會議에서 新5條A와의 타협 즉 輸入을 實施로 看做하지 않아도 된다는 條項이 들어 있어 3차회의에서는 製法特許時에는 그 제법으로 生產된 輸入品은 物의 특

허와 同等한 權利를 亭有한다는 규정과의 조정이 菲
요하다는 提案이 있었으나 역시 실무회의에서 결론
을 내어 계속 협의키로 했다.

新5條A는 개발도상국등에서 特許發明이 適正하게
실시되지 않을 경우에는 非自發的 實施權을 설정하게
되어 있으나 特別한 경우에는 그 實施權은 排他的인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多數 實施權者가 併行하여 生
產活動을 展開하면 다 같이 倒產한다는 염려가 있어
오히려 그 나라의 산업 발전에 阻害要素가 됨을 想定
한 것이다. 이 조항은 개발도 상국의 주장이 받아
들여졌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이미 不滿을 表明한
나라가 있어 正式으로 개정될 外交會議에서는 多小
의 曲折이 豫想된다.

세계. 原產地表示의 商標와의 저촉문제도 懸案事項
의 하나이다. 개발도상국쪽에서는 不使用商標의 취
소시기를 條約中에 明記해야 하며 마크의 獨立原則
이 오히려 本國에서 이미 사용되지 않고 있는 철학
은 商品에 붙여서 개발도상국에 판매하는 역할을 하
고 있으므로 이 조항을 刪除해야 한다는 주장이었
으나 이번 회의에서는 특허쪽에 時間을 뺏겨 다음회
의로 移越되었다.

한편 B그룹과 D그룹의 對立가운데 主要한 것은 發
明者證問題이다. 이 발명자증제도는 蘇聯등 共產國
가들이 채용하고 있으며 發明者는 名譽權이 主이고
實施權限은 어디까지나 국가나 발명자의 所屬機關에
歸屬된다. 存續期間은 永久이며 保護對象도 合理
化提案이나 發見까지 포함되어 그 폭이 넓다.

파리협약에 加入하려면 발명자증제도 이외에 특허
제도도 실시하여 自由主義國家에서의 특허출원도 받
아들여야 하나 이제까지는 그 보호대상 등에 制約이
너무 많았다. 예를 들어 原子力이나 醫藥品에 대한
발명에는 발명자증은 발급해도 특허는 인정하지를 않
는다. 이에 따라 B그룹에서는 이 제약의 差別을 없
애려고 주창한 끝에 調整委員會를 구성, 협의하였으
나 결론없이 계속 검토키로 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未盡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1979
년 여름쯤 루마니아에서 열릴 協約改正會議에 앞서
1~2회의 준비회의가 다시 열릴 예정이다.

그러나 現制度를 固守하려는 선진국群, 이 제도를
排斥하는 개발도상국群, 그리고 이 틈에 政治力學을
發揮하려는 공산권과의 3極構造下에서 공업소유권국
체제도 今後 向方이 注目을 끌게 한다.

개발도상국들의 攻擊의 焦點은 400년에 걸쳐 긴 세
월동안 一方의 收奪當하였으며 파리협약도 이를
支援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그의 補償
으로 非相互의 特惠 즉 一方의 特惠를 요구하게 된 것
이다.

다시 말해서 선진국과의 技術交流는 바라는 바이나
그려자면 오랜동안 外國技術의支配를 免치 못할뿐
아니라 龍大한 技術料를 支拂해야 하므로 對等한 立
場에서 國內產業을 발전시킬수 없다는 것이 개발도
상국들의 貞意이다. 그리하여 條約改正에 앞서 上記
와 같은 개발도상국들의 개정안이 나오게 되었으며
주장의 줄거리를 추리면 다음과 같다.

1. 內國民待遇의 原則에 있어 形式을 削減하고 特惠
待遇를 인정하라.
2. 優先權規定에서는 우선권기간을 선진국民보다 개
발도상국 국민에게 50%이상 長期間을 인정하라.
3. 各國 特許獨立의 원칙에 대한 규정 즉 同盟國國民
이 다른 동맹국에 권리리를 갖고 있을 경우 그 권리
가 각각 別個의 것이기 때문에 特許性이 없는 선
진국의 발명이 本國에서는 등록되지 않아도 개발
도상국에서는 등록되어 선진국의 低質商品이 流入
되는 弊端이 있으므로 本國特許에 從屬케 하라.
4. 特許取消制限에 대하여는 自國에서 실시되지 않
는 특허는 直時 取消하라.

PCT總會는 4月에 開催

—6月까지는 20個國加盟—

世界知的所有權機構(WIPO)는 유럽特許條約(EPC)
의 發効를 契機로 特許協力條約(PCT)의 今後 展望
에 관하여 發表한 바 있다.

그 내용을 要約하면 英國이 1977年 10月 24일에
PCT에 批准書를 寄託함으로써 PCT의 發効 諸條件이

—다음면에 계속—

充足되었다.

PCT國際出願의 受理開始日字는 今年 4月에 열리 는 PCT締約國總會에서 決定되겠으나 대체로 6월1일 부터 豐想된다. 이 날은 EPC의 特許出願開始日로 EPO(유럽特許廳)에서 결정한 날이기도 하다.

PCT에서는 체약국의 國民이나 居住者는 國際特許出願을 할 수가 있으며 그 國제출원의 効果는 出願인이 指定한 PCT체약국의 國內官署에 同時出願된 것으로 認定된다. 그뒤의 國제출원은 先行技術調查對象이 되며 또 출원인이 지정한 몇나라에 대하여 다시 그 출원을 繼續할 만한가를 결정할 수가 있다. 指定國에서의 國內節次는 출원인이 早期節次開始를 請求하지 않는限 優先日부터 20個月이 經過할 때까지 延長하게 된다.

국제출원으로 最初의 출원 혹은 파리協約 締約國의 國內官署 또는 유럽특허청에 출원된 출원의 優先權을 주장한 후의 출원을 가리킨다.

發明의 保護가 PCT 및 EPC의 양쪽 체약국에서의 國제출원에 의해 要求되고 있을 때는 출원인은 그 나라의 国내 법령이나 EPC의 어느 곳으로부터도 보호를 요구할 수가 있다.

PCT에 지불되는 諸料金額은 금년 4월총회에서 결정되며 6월1일 까지에 PCT의 체약국이 되는 나라는 美, 英, 佛, 西獨, 瑞西 및 蘇聯등의 高度工業國들이 포함된 20개국이 예상되나 日本 또는 오스트리아는 금년 후반에 加盟할 것으로 보인다.

日・中共商標協定發効

—互惠아닌 變則待遇認定—

지난해 9月29日에 協定이 成立된 日本과 中共間

의 商標保護協定은 1月에 發効하여 相互出願을 受理하기 시작했다.

全文 2條로된 簡單한 이 협정은 形式上으로는 서로 相對國民에게 最惠國待遇를 하게 되어 있다. 彼此의 출원은 일본서는 特許廳이 處理하고 중공에서는 國際貿易促進委員會商標代理處를 통하여 中央工商行政管理局에 登錄하게 된다.

그러나 중공은 先願主義體制라는 名目으로日本人이나 中共人이 전간에 먼저 출원하면 등록하게 되어 있으나 일본에서의 출원은 일본특허청에 먼저 등록되어야 하고 未登録狀態에서는 接受되지 않는다. 다만 일본 특허청에 출원중인 것은 출원 사실을 認證시킨 다음 특허청의 등록을 기다려 중공에서 등록하는 方式을 취하기로 했다.

그뿐아니라 일본내에서의 중공의 有名商標는 駐日中共國際貿易促進委員會나 關係商社가 그 名義로 權利를 取得한다는 變則互惠方式을 採擇하고 있다.

日 特許廳에 特許協力條約課

—PCT發効 對備 新年부터—

PCT(特許協力條約)의 發効에 對備하여 日本 特許廳은 特許協力條約課를 1978年부터 設置運營한다.

同課는 國際出願의 接受, 出願人에 대한 補正의 指示, 指定國에의 出願書類發送 등의 業務를 主로 取扱하게 된다.

또한 日本은 PCT에의 加盟에 앞서 國內特許法의 改正批准案을 다음 國會에 回附하고 今年가을쯤 發効시킬 예정이다. 일본은 PCT에의 가맹과 더불어 國際出願受理官署, 國際調查機關, 國際豫備審查機關등의 指定을 예상하여 國內體制를 갖추고 있다.